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5. . .

의결 사항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(안)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의자	김영태 의원 외 1인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(안)

(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

발의자: 김영태·김정도 의원(2인)

찬성자: 김영길·김재우·박세채·이상호
이정희 의원(5인)

1. 주 문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주요내용

요구의원	출석일자	출석대상자	출석장소	출석요구사항
김영태	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(1일간)	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	구미시의회 본회의장	-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
김정도				- 박정희체육관 시설 및 설비 개선방안 - 금오산 케이블카 및 분수대 조성 추진현황 - 구미시 예산 분배의 균형성 확보방안 - 광평 다송 두산건설 공사현장 소음민원 관련 - 신광지구 도시개발 관련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가. 지방자치법 제51조

나.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

- 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